

제재내용 공시

1. 조합명 : 경인북부수협

2. 제재조치(요구)일 : 2026. 04. 27.

3. 제재조치(요구)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임원	경고(1명)
직원	경고(8명)

※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(재심)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

4. 제재대상 사실

기업시설자금대출 취급 소홀

- 토지매입목적의 기업시설일반자금 대출 취급 시 소요자금에 따른 대출한도를 고려하지 않고 가용 담보가액으로만 산출하여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하였음.

< 관련법규 >

- 「상호금융 여신규정」 제10조(심사 및 승인)
- 「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」 제1편 제5조(대출금의 용도), 제8조(소요자금 대출가능한도), 제15조(대출상당), 제19조(대출서류의 징구 및 확인), 제42조(승인대상 대출금), 제48조의3(심사대상), 제48조의4(운영), 제48조6(업무처리), 제54조(심사사항), 제80조의3(대출한도 산출)
- 「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」 제3편 제3조(상당 및 서류징구), 제45조(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), 제46조(시설자금 소요자금 산정), 제46조의2(시설자금 대출한도)